

진도군 공고 제2022-949호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진 도 군



1.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추가) 목록 1부.
2.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추가) 각 1부.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1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 7.)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고,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여성, 노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22. 5. 道 자치경찰위원회 ‘시·군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협조 요청’ (전담 공무원 지정, 조례 표준안 송부)
 - 2022. 6. 道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위한 협조사항 안내’ (전담인력 배치, 관련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 道 자치경찰위원회 표준안 반영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안 제5조, 제6조)
 -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범죄예방시설 설치, 범죄 피해자 보호, 교통 안전관리, 청소년 선도 등 예산 범위 내 관련 사업 지원
-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공동협의회장: 군 주무 부서장 및 경찰서 주무 과장
 - 공동간사: 군 주무 팀장 및 경찰서 주무 계장
 - 정례회(분기별 1회) 및 임시회(필요시) 개최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음

6. 입법예고: 2022. 11. 2. ~ 11. 22.(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붙임(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3. 원안의결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특성과 진도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이용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진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2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5대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 군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행정 강화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현황
 - (현행) 2국 18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7읍·면
 - (개정) 2실 16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7읍·면
- 국(局) 폐지 및 실(室) 신설
 - 국(局) 폐지 : 관광개발국, 경제산업국
 - 실(室) 신설 :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 부서 신설 및 통합
 - (신설) 가족행복과, 농수산유통사업단(사업소)
 - (통합) 환경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
경제마케팅과, 그린에너지사업과 → 경제에너지과
- 농업분야 조직 강화
 - 농업지원과 1과, 농업기술센터 1담당관
→ 농업기술센터 3과(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

○ 부서 변경 세부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본청	기획예산과	기획홍보실	과 → 실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실	과 → 실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생활지원과	-	
	행정과	총무과	명칭변경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	
	수산지원과	수산지원과	-	
	진도개축산과	진도개축산과	-	
	진도항만개발과	해양항만과	명칭변경	
	경제마케팅과	경제에너지과	통합	
	그린에너지사업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	가족행복과	신설	
	관광과	관광과	-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	-	
	건설교통과	건설과	명칭변경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명칭변경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수질과	통합 및 분리	
	환경산림과	산림휴양과		
	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
직속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
	농업 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	조직강화
		농업기술담당관	농촌활력 연구개발과	
사업소	-	농수산유통사업단	신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	
	국민해양안전관	국민해양안전관	-	
읍·면	7개 읍·면	7개 읍·면	-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1. 9. ~ 11. 21.(12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원안의결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 및 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실

가.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 및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군 행정의 감사, 계약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제, 송무,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군정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실

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계절근로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사. 지역(마을) 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자.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등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인구, 고향사랑, 일자리, 귀농귀촌,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3. 안전생활지원과

가. 안전정책 총괄·조정

나. 운수·교통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다.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마.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4. 총무과

가. 인사, 조직관리, 선거,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 공무원 복리·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라. 전산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세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과

가. 민원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허가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축 인·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지적, 부동산,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수산지원과

가. 해양수산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전략품종육성에 관한 사항

다. 양식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양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어업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8. 진도개축산과

가.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나. 진도개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축산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진도개 보호육성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항만과

가. 해양 및 항만정책에 관한 사항

나. 어촌·어항에 관한 사항

다. 섬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진도항 및 배후지 개발에 관한 사항

마.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해양 및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10. 경제에너지과

가. 지역경제 정책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가로등,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그린뉴딜정책에 관한 사항

마.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지역경제 및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민복지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다.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바. 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12. 가족행복과

가. 여성 및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라. 아동 및 영유아 복지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과

가. 관광정책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체육과

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체육진흥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문화, 예술, 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5. 건설과

가. 건설정책 및 건설사업 설계심의(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

나.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개발과

가. 농산어촌 종합개발, 읍·면 소재지개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17. 환경수질과

가.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호 및 폐기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환경관리센터 업무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마. 분뇨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도시설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아. 마을하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분뇨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하수관거 시설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의 환경,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18. 산림휴양과

- 가. 산림 정책 및 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 다. 산림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라. 도시숲, 공원 등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마.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6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운영)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로 한다.

③ 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등 농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습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후계자 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0.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업교육 및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농수산유통사업단에 단장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국민해양안전관에 관장을 두며, 단장·소장·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유통사업단장

가. 농수산물 유통·판매 등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수특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 다. 농어업인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틈새작목 및 소규모 농어업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의 농수산 유통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사업소장

- 가. 문화·관광·체육 시설물 관리 관한 사항
- 나. 문화·관광·체육 시설물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건축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라. 공공시설물 점검 및 보수
- 마.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민해양안전관장

- 가. 해양안전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나. 4.16 기억관, 유스호스텔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다. 해양안전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라. 해양안전관 각종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사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읍·면에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장 면출장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사무에 관한 사항
3. 산업사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진도군보건소	진도읍 남동1길 40-9	진 도 군 일 원
군 내 지 소	군내면 금골길 38	군 내 면 일 원
고 군 지 소	고군면 진도대로 306	고 군 면 일 원
의 신 지 소	의신면 돈지1길 67-12	의 신 면 일 원
임 회 지 소	임회면 십일시길 53-3	임 회 면 일 원
지 산 지 소	지산면 인지인천2길 2	지 산 면 일 원
조 도 지 소	조도면 창유2길 12	조 도 면 일 원
녹진보건진료소	군내면 진도대로 8405	나리, 신기, 죽전, 대야, 녹진, 만금, 대사
회동보건진료소	고군면 회동길 43	향동, 가계, 회동, 용호, 금호도, 초상, 초하, 초중, 초평, 송군, 모도(의신)
금갑보건진료소	의신면 금갑길 83-6	금갑, 접도, 원다, 수품, 구자도
연동보건진료소	임회면 송호연동로 487	백동, 신동, 굴포, 남선, 남동, 서망, 팽목, 상연, 내연, 동구, 유목(지산)
광석보건진료소	임회면 호구동길 31-3	상미, 중미, 하미, 광전, 선향, 장구포, 용산, 호구, 중매, 길우, 고산,
죽림보건진료소	임회면 헌복동길 16	귀성, 탑림, 죽림, 동헌, 강계
가치보건진료소	지산면 가치길 74-4	와우, 금노, 가치, 하봉암, 가학, 세방, 세포, 상심동, 하심동, 수양, 마사
길은보건진료소	지산면 거제길은로 277	상고야, 하고야, 소앵무, 백연동, 대앵무, 길은, 고길, 용동, 소포, 안치, 거제
상조도보건진료소	조도면 조도대로 1298	맹성, 당도, 동구, 울목, 여미, 옥도
서거차도보건진료소	조도면 서거차도1길 75	서거차, 맹골
가사도보건진료소	조도면 가사도길 108	가사, 궁항, 돌목
대마도보건진료소	조도면 대마도길 71-10	대마, 대막
관매도보건진료소	조도면 관매도길 65	관매, 관호, 청등
동거차도보건진료소	조도면 동거차동육길 58-9	동육, 동막
관사도보건진료소	조도면 관사도길 201-10	소마, 관사, 관작, 진목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3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농수산유통사업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시설관리사업소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국민해양안전관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별표 3]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읍·면 사무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동외, 당동, 용두, 두정, 통정, 성동, 성서, 북상, 서외, 사정1, 사정2, 송현, 고작, 남동, 남산, 조금, 포산, 포서, 지도, 포구, 죽엽, 수역, 북치, 매향, 신흥, 월평, 수유, 전두1, 전두2, 청용, 산월, 내산월, 소포, 해창, 염장
군내면 사무소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나리, 신기, 죽전, 대야, 녹진, 만금, 대사, 용인, 덕병, 한의, 신동, 금성, 안농, 연산, 금골, 둔전, 장언, 세등, 용장, 송산, 상가, 한사, 분토, 내동산, 외동산, 월가, 정거, 정자
고군면 사무소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석현, 오일시, 신리, 고성, 평산, 도론, 유교, 오류, 벽파, 연동, 내동, 마산, 황조, 오상, 오하, 지수, 지막, 별포, 하울, 원포, 모사, 향동, 가계, 회동, 용호, 금호
의신면 사무소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사상, 사하, 침계, 영산, 진설, 칠전, 중굴, 하굴, 신생, 창포, 가단, 돈지, 향교, 옥대, 정지, 중리, 청룡, 연주, 응덕, 초상, 초하, 초중, 초평, 송군, 모도, 거룡, 신정, 사정, 만길, 원두, 도명, 도목, 도항, 송정, 죽청, 활곡, 금갑, 접도, 원다, 수품, 구자도
임회면 사무소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상미, 중미, 하미, 광전, 선항, 장구포, 용산, 호구, 중매, 길우, 고산, 매정, 사령, 십일시, 고방, 석교, 구분실, 봉상, 송월, 송정, 중만, 상만, 귀성, 탐립, 죽림, 동헌, 강계, 백동, 신동, 굴포, 남선, 남동, 서망, 팽목, 상연, 내연, 동구
지산면 사무소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	인천, 독치, 관마, 외삼당, 내삼당, 상고야, 하고야, 소앵무, 백연동, 대앵무, 길은, 고길, 용동, 소포, 안치, 거제, 상보전, 하보전, 갈두, 와우, 금노, 가치, 상봉암, 하봉암, 가학, 세방, 세포, 상심동, 하심동, 수양, 마사, 오류, 월춘, 대천, 송호, 유목
조도면 사무소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관매, 관호, 읍구, 육동, 신전, 창리, 어류포, 산행, 유토, 명지, 곤우, 대마, 대막, 소마, 관사, 관작, 라배, 맹성, 당도, 동구, 울목, 여미, 성남, 죽항, 독거, 청등, 모도, 진목, 옥도, 눌옥, 외병, 내병, 동육, 동막, 서거차도, 맹골도, 가사도, 궁항, 돌목

[별표 4]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가사출장소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길 106-1	가사도리
거차출장소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99	동거차도리, 서거차도리, 멩골도리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5대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 군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행정 추진

2. 주요내용

- 진도군 공무원 총 정원 증원(안 제2조) : 640명 → 642명

구분	정원			비고
	현행	변경	증감	
총수	640명	642명	+2	
집행기관	628명	628명	-	
의회사무기구	12명	14명	+2	- 의정활동에 따른 정책 연구 및 관리·감독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구분	계	일 반 직					정무직	별정직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당초	640	598	4	1	31	562	1	1	3	10	27
변경	642	600	2	3	31	564	1	1	3	10	27
증감	+2	+2	△2	+2	-	+2	-	-	-	-	-

3. 조례안 : 불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1. 9. ~ 11. 21.(12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0명”을 “6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2명”을 “14명”으로 한다.

제4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40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2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42명</u> <u>이며</u>-----.</p> <p>1. (현행과 같음)</p> <p>2. ----- <u>14명</u></p>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비 고
총 계	642	-					
정무직 계	1	-					
군 수	1	1	-	-	-	-	-
일반직 계	600	-					
4급	2	1	-	1	-	-	-
4~5급	3	2	-	-	-	1	-
5급	31	16	2	4	3	6	-
6급이하 계	564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1	-					
연구직 계	10	-					
연구사	10	-					
지도직 계	27	-	-	27	-	-	-
지도관	2	-	-	2	-	-	-
지도사	25	-	-	25	-	-	-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4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민선8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진도군 자치법규의 행정기구 명칭 및 직위·직제 등을 일괄 개정

2. 주요내용

- 개정대상 : 진도군 자치법규(조례) 67개 117건
-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및 직위·직제 등 일괄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1. 16. ~ 11. 2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조례 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주무과장이	주무 실·과장이	기획예산과
		제2조 제3항	각 국과장과	각 실·과장과	
2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5항	국·과장을	실·과·소장을	기획예산과
		제8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3	진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4조 제5항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기획예산과
		제7조 제5항	기획담당이	기획팀장이	
		제10조 제2항	담당	팀장	
4	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기획예산과
		제11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이	기획홍보실장이	
		제17조 제1항	예산담당주사가	예산팀장이	
5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기획예산과
		제6조 제3항 제1호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6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예산담당주사가	예산팀장이	기획예산과
7	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기획예산과
		제8조 제2항	예산담당으로	예산팀장으로	
		제17조 제4항	기획예산과장에게	기획홍보실장에게	
8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기획예산과장	기획홍보실장	기획예산과
9	진도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은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기획예산과
10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6조 제5항	법무의회담당이	법무의회팀장이	기획예산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1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담당 과장과	담당 실장과	일자리투자과
			국·과·소장을	실·과·소장을	일자리투자과
12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경제산업국장으로	부군수로	일자리투자과
		제17조 제3항	담당 과장으로	담당 실장으로	일자리투자과
13	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일자리투자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경제마케팅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으로	인구정책실장, 수산지원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일자리투자과
14	진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이	기획홍보실장이	일자리투자과
		제9조	각 실과장은	각 실·과·소장은	일자리투자과
15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일자리투자과장이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이	일자리투자과
16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한다.	일자리투자과
17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0조 제2항	일자리투자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인구정책실장, 수산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일자리투자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18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1호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행정과
19	진도군 공인 조례	제6조 제1항	행정과장에게	총무과장에게	행정과
		제6조 제2항	행정과장은	총무과장은	
		제7조 제1항	행정과장에게 신고하고 행정과장에게 인계하여야	총무과장에게 신고하고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제7조 제2항	행정과장은	총무과장은	
		제9조 제1항	행정과장은	총무과장은	
		제10조 제1항	행정과장에게	총무과장에게	
		제10조 제2항	행정과장은	총무과장은	
		제11조	행정과장은	총무과장은	
		제13조 제2항	행정과장에게	총무과장에게	
		제15조	행정과장에게	총무과장에게	
	별표2 (공인관리자)	행정과장	총무과장		
20	진도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행정과장으로	총무과장으로	행정과
21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 건설교통과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주민복지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22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행정과장	총무과장	안전생활지원과
		제4조 제2항 제1호	기획예산과장이	기획홍보실장이	
23	진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	국·과장으로	실·과장으로	안전생활지원과
24	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5호	국·과·소장을	실·과·소장을	안전생활지원과
		제9조 제2항 제1호	국·과·소의 장을	실·과·소의 장을	
		제9조 제2항 제2호	국·과·소 중에서	실·과·소 중에서	
		제9조 제2항 제3호	국·과·소가	실·과·소가	
25	진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5조 제3항 제5호	진도군 관광개발국장	삭제	안전생활지원과
26	진도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안전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전생활지원과
27	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안전생활지원과
28	진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전생활지원과
		제13조 제1항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29	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3항	여성가족담당	가족정책담당	안전생활지원과
		제7조 제4항	안전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30	진도군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안전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전생활지원과
		제16조 제4항	안전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31	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전생활지원과

연 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 정 사 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32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관광개발국장	삭제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33	진도군 중기 관리 조례	제2조	건설교통과	건설과	건설교통과
34	진도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건설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설교통과
			환경산림과장	환경수질과장	
35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관광개발국장이	부군수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수질과장	
36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3항	관광개발국장으로	부군수로	지역개발과
		제4조 제3항	지역개발과장 진도항만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해양항만과장	
37	진도군 경관 조례	제15조 제2항	관광개발국장	부군수	지역개발과
		제28조 제2항	관광개발국장	부군수	
		제28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산림과장	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과장 산림휴양과장	
38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3항	관광개발국장	부군수	지역개발과
		제5조 제4항 제1호	기획예산과장 지역개발과장	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과장	
		제10조 제1항 제1호	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39	진도군계획 조례	제61조제3항	관광개발국장이	부군수가	지역개발과
		제61조제4항	건설교통과장	건설과장	
		제72조제2항	관광개발국장이	부군수가	
40	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관광개발국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부군수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지역개발과
41	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42	진도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환경산림과장	산림휴양과장	지역개발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43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경제산업국장	부군수	경제마케팅과
		제7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일자리투자과장, 경제마케팅과장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44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지역개발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경제마케팅과
45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경제산업국장	부군수	경제마케팅과
		제19조 제2항	기획예산과장, 일자리투자과장, 경제마케팅과장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경제에너지과장	
46	진도군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 제3항	담당국장	담당과장	경제마케팅과
		제14조 제6항	담당과장, 담당주사	담당팀장, 담당자	
47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경제산업국장	부군수	경제마케팅과
		제5조 제3항	국·과·소장은	실·과·소장은	
48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부군수 농수산유통사업단장 안전생활지원과장	경제마케팅과
		제7조 제3항	업무담당국장	부군수	
49	진도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경제마케팅과장,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경제마케팅과
50	진도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담당업무 국장으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경제마케팅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51	진도군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4항	경제산업국장, 경제마케팅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농업지원과
		제15조 제1항	농업정책팀장으로	농정기획팀장으로	농업지원과
		제16조 제2항	농업정책팀장으로	농정기획팀장으로	농업지원과
52	진도군 농업·농촌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담당국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지원과
		제18조 제4항	농업정책담당으로	농정기획팀장으로	농업지원과
53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담당국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지원과
		제8조 제3항 1호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지원과
54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을 위한 조례	제6조 제2항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지원과
		제6조 제6항	밭곡물업무 담당으로	미래농업팀장으로	농업지원과
55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	경제산업국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지원과
		제6조 제3항	기획예산과장,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기획홍보실 예산팀장으로	농업지원과
		제6조 제6항	농업정책팀장이	농정기획팀장이	농업지원과

연번	자치법규명	조·항·호, 별표, 별지서식	개정 사항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56	그린진도21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환경산림과장	환경수질과장	환경산림과
57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조례	별표	환경산림과	환경수질과	환경산림과
58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1	환경산림과	환경수질과	환경산림과
59	진도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	경제산업국장	부군수	환경산림과
		제6조 5항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질과장 연구개발과장	
60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환경산림과장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환경수질과장	환경산림과
61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제4조 3항 제1호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지역개발과장 다. 농업지원과장 라. 수산지원과장 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소장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실장 나. 도시개발과장 다. 수산지원과장 라. 농촌활력과장 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소장	농업기술센터
62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3항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63	진도군 친환경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항	교무처장은 경영지원과장, 교무실장은 인력육성담당,	교무처장은 농촌활력과장, 교무실장은 농업교육팀장,	농업기술센터
		제4조 4항	경영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농촌활력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64	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4항 제1호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65	진도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별표 1	진도군청상하수도사업소 (540-3522)	진도군청환경수질과 (540-0000)	상하수도사업소
66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수질과장	상하수도사업소
67	진도군 하수도 조례	별지 2	상하수도사업소 540-6228	환경수질과 540-0000	상하수도사업소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5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에게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인 광복회 회원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안 제11조)
 - (신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광복회)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1. 1. ~ 2022. 11. 2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광복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6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로당 대표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2조)
- 적용범위, 비용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안 제3조~5조)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절차, 지도 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10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31 . ~ 11. 21.(21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수정의결

○ 수정안

조항	당초	수정
제6조제3항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u>단,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u>

○ 대조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② (생략)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② (생략)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u>단,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u>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회”란 대한노인회 정관상 읍·면에 설치하는 산하조직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보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7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의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4조)
- 지급절차와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31 . ~ 11. 21.(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원안의결

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또는 그의 배우자)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진도군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 ① 효도수당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300,000원으로 한다. 단,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명절 7일 전에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도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8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치 (안 제2조)
- 가족센터 시설 (안 제3조)
- 가족센터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
- 휴무일 등 (안 제5조)
- 행사 운영 및 지원 (안 제6조)
-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안 제7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31. ~ 2022. 11. 2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 수정의결

○ 수정안

조항	당초	수정
제9조제2항	해제 또는 해지	취소

○ 대조표

개정안	수정안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u>해제 또는 해지</u>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 <u>현행과 같음</u> ② ----- <u>취소</u> ----- ----- -----

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07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진돌이장난감도서관
5. 실내놀이터
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진도군 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무일	
	학기중	방학중	공통	요일별
가족센터	09:00~18:00	09:00~18:00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	09:00~18:00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다함께 돌봄센터	11:00~20:00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실내놀이터	11:00~20:00	09:00~18:00		일요일, 월요일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9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 감면기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상위법의 경감률 직접 명시에 따른 조문 삭제
 -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 고지서 장당 150원 →2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장당 300원 →500원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8조, 제78조, 제83조 및 제92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2. 11. 22.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 을 “250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 을 “500원” 으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삭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2024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신 설>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 략)

2.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 -----

----- 500원

② (현행과 같음)

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0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소장 작품의 효율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시 불가 작품의 불용 절차 및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6조)
 - 소장 작품 불용 결정
- 작품 불용 절차 신설(안 제17조)
 -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31. ~ 11. 21.(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8.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화) 원안의결

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장 작품의 불용 결정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작품 불용)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u><신 설></u></p> <p><u>제17조</u> (생 략)</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소장 작품의 불용 결정</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제17조(작품 불용)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p> <p><u>제18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p>

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1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에 의거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제1조)
- 용어정의(제2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 내용(제3조)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31. ~ 11. 21.(21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22.(화) / 원안의결

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

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2022-122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 변경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 주요골자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분	경정 (A)	기정 (B)	증감 (A-B)	
				%
합계	526,607,255	511,043,097	15,564,158	3.05
일반회계	516,615,318	500,906,509	15,708,809	3.14
특별회계	9,991,937	10,136,588	△144,651	△1.43

- 의안내용 : 총괄조서(첨부1), 기금회계(첨부2)

【첨부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조서

□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감	%		
합 계	526,607,255	511,043,097	15,564,158	3.05		
일반회계	516,615,318	500,906,509	15,708,809	3.14		
특별회계	9,991,937	10,136,588	△144,651	△1.43		

□ 세 출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526,607,255	511,043,097	15,564,158			
일 반 회 계	516,615,318	500,906,509	15,708,809			
특 별 회 계	9,991,937	10,136,588	△144,651			
특 별 회 계	소 계	9,991,937	10,136,588	△144,651		
	상 수 도	8,316,040	8,376,040	△60,000		
	의료급여기금	906,163	990,988	△84,825		
	자 활 기 금	641,584	641,584	-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12,177	12,177	-		
	주 택 사 업	71,921	71,921	-		
	간 척 사 업	44,047	43,873	174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5	5	-		

【첨부 2】

□ 기금회계 (수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감	%		
합 계	21,212,738	20,942,738	270,000	1.29		
기금회계	21,212,738	20,942,738	270,000	1.29		

□ 기금회계 (지출)

(단위: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21,212,738	20,942,738	270,000			
농 수 산 물 가 격 안 정	8,347,366	8,347,366	-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46,431	46,431	-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127,805	127,805	-			
재 난 관 리	2,384,394	2,114,394	270,000			
식 품 진 흥	84,129	84,129	-			
문 화 진 흥	5,690,556	5,690,556	-			
통합재정안정화	4,032,057	4,032,057	-			
체 육 진 흥	500,000	500,000	-			